

대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다27483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다274837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2나12039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2. 3. 23 선고 2021가소1769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(선정당사자), 피상고인

B

판결선고 2022. 12. 15.

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나12039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동원, 주 심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천대엽
별지